

노인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노인정책관

매뉴얼 개정 개요

- 매뉴얼의 형식을 단순화하여 재난유형별 예방·대비 활동 및 대응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상시 혹은 재난 위기 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매뉴얼의 내용을 최대한 현실 상황에 부합하게 표현하여, 시설 구성원이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시설이용자를 보조해야 하는 시설종사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기준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매뉴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시설 유형별 매뉴얼 적용 범위

- 노인시설 안전관리 : 노인복지법 제31조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

※ 본 매뉴얼과 함께 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 내 비치하여야 합니다.

[목 차]

I. 재난 위기 대응체계	1
1. 재난 위기 시 연락체계	1
2. 재난 위기 시 대응체계	2
3. 재난 위기 시 대응조직	3
II. 안전관리 활동	4
1. 전기 안전관리	4
1) 예방 및 대비 활동	4
2) 대응 활동	5
3) 기타 활동	6
2. 가스 안전관리	7
1) 예방 및 대비 활동	7
2) 대응 활동	7
3) 기타 활동	8
3. 기타 안전관리	9
1) 낙상	9
III. 유형별 재난관리 활동	11
1. 사회재난	11
1) 화재	11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11
② <대규모 시설> 대응 활동	14
③ <소규모 시설> 대응 활동	15
④ 대피 행동 요령	16
⑤ 대피 후 행동 요령	16

2) 건축물 붕괴 재난	18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18
② 대응 활동	19
③ 대피 후 행동요령	21

2. 자연재난	22
---------------	----

1) 태풍·호우재난	22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22
② 대피 행동 요령	24
③ 대피 후 행동 요령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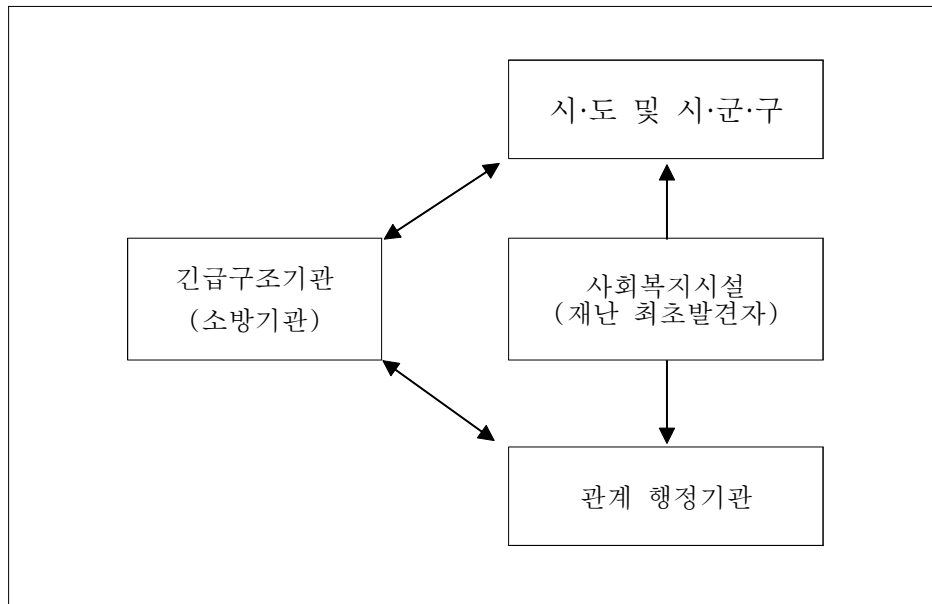
2) 지진 재난	26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26
② 대응 활동	27
③ 대피 행동 요령	28
④ 대피 후 행동 요령	30

부 록	31
---------------------	-----------

1.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32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33
3. 안전관리점검표	35
4. 안전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	40
5. 관련 규정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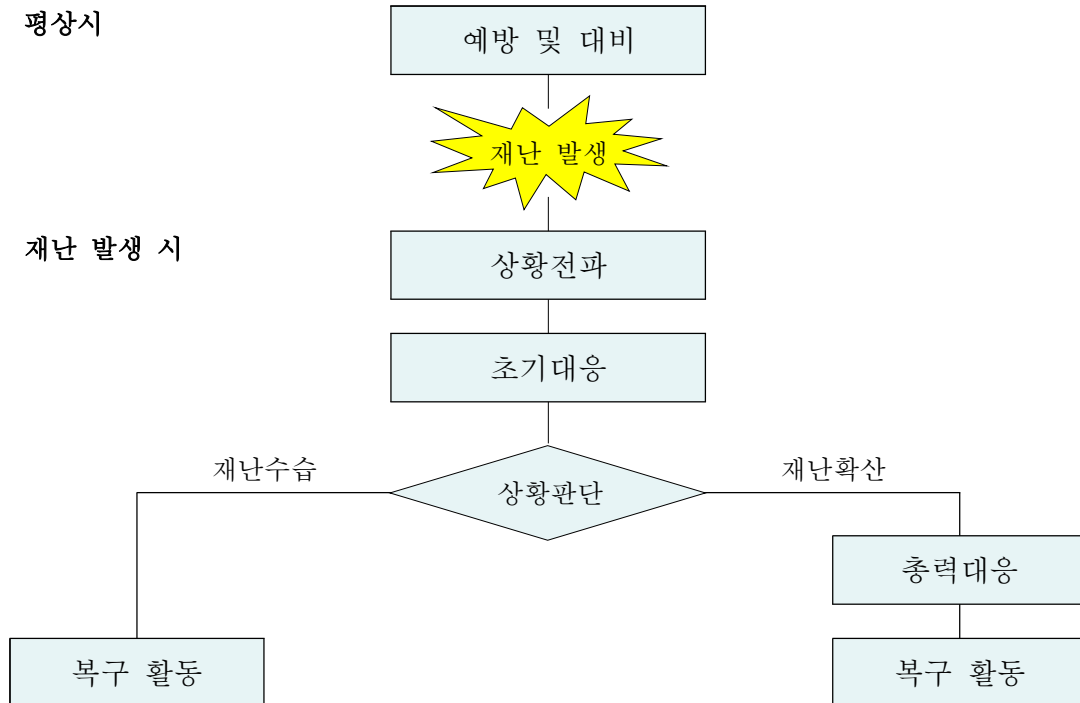
I. 재난 위기 대응체계

1. 재난 위기 시 연락체계



기 관	주요 임무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 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 시 시·도, 시·군·구 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 사고수습 후 사고 발생 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p>※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 안전담당자로 지정 운영</p>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자체 안전 점검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 비상 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 연락망 구축 • 시설 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 복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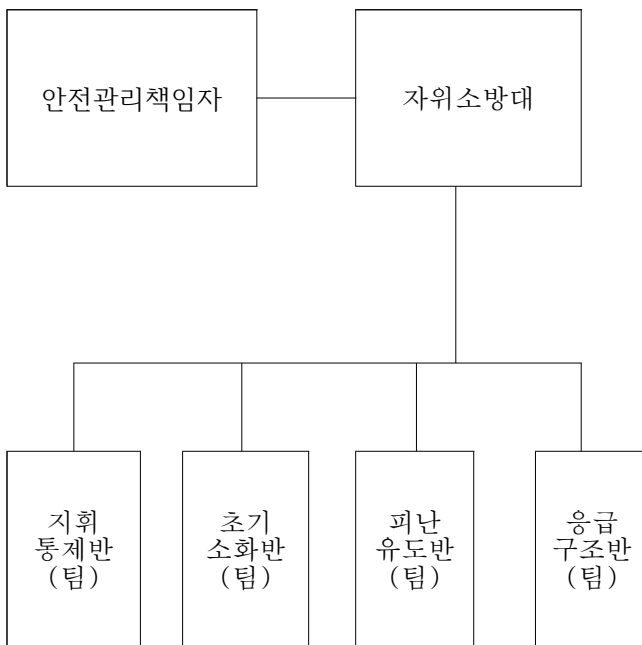
2. 재난 위기 시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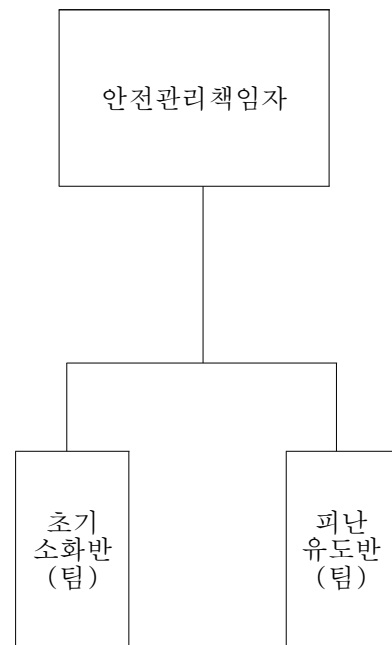
단계		담당	주요활동
평상시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종사자	✓ 예방 대비 안전관리 활동 - 각종 계획서 점검 - 안전 점검 - 교육 및 훈련 - 비상 연락망 최신화 - 각종 장비 비축 - 특이 상황감시 등
재난 위기 시	상황전파 (재난 임박 혹은 발생 시)	- 위기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시설종사자 - 위기 상황 신고접수를 받은 시설종사자	✓ 상황전파 활동 - 119, 112 및 유관기관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자위소방대 출동) - 시설 내 안내방송 - 최초 현장 대응
	초기대응	- 자위소방대장 - 시설종사자	✓ 최초 현장 대응 인력 장비 보강 후 초기대응 실시 ✓ 자위소방대장은 총력대응 여부 판단 및 유관기관 협업 - 119, 112 및 유관기관 수시 확인 신고
	총력대응	- 자위소방대 - 지휘통제반(팀) - 초기소화반(팀) - 피난유도반(팀) - 응급구조반(팀) * 시설별 소방계획서에서 따라 조직 구성	✓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총력대응 - 총력대응(인력 및 장비) 추가 보강 - 시설이용자 대피 -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병원 이송 ✓ 유관기관 도착 후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
복구 활동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종사자	✓ 응급 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실시 ✓ 피해 상황집계 ✓ 전기, 통신, 가스등 시설물복구

3. 재난 위기 시 대응조직

< 일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



<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



(비고)

- 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소방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시설 여건에 부합하여 조직구조 및 명칭을 구성함

II. 안전관리 활동

1. 전기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전기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전기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 전기설비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배선 쇼트(단락) 발생 예방 점검
 - 트래킹 예방 점검
 - 절연 노화 예방 점검
 - 단선 상태(반부분단선) 발열 예방 점검
 - ▶ 난방기구(전기난로)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 가전용품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 ▶ 배전판·전선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전기사고 유형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전기사고 유형	정 의	예방 활동
누전 	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기가 새고 있거나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 전기가구, 금속 기구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	- 누전차단기 설치 - 콘센트, 스위치 박스 등 누전 위험이 있는 곳 수시로 확인 -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수시로 확인 -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스위치를 끄
합선 	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 피복이 녹아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때 스파크와 불꽃이 동시에 일어나 고열이 발생	-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 금지 - 노후화된 배선의 교체 - 과전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
감전 	전기가 누전되어서 흐를 때 사람이나 동물이 전기에 접촉되어 전류가 인체에 통하게 되어 전기를 느끼는 현상	-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 노출 금지 - 누전차단기 설치 - 전기기기 스위치 조작 금지 -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기기 접촉금지 - 안전기는 반드시 정격 퓨즈 사용 - 불량제품이나 고장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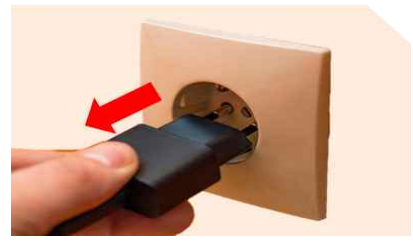
- 시설종사자는 다음의 전기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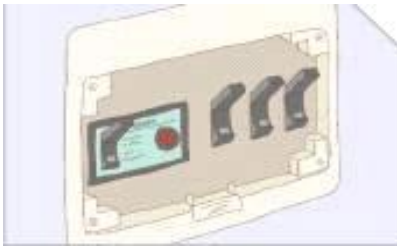
젖은 손 전기 접촉금지



문어발 접속금지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뽑기



누전차단기 설치, 이상 유무 확인



습기가 많은 장소의 전기용품은 접지 후 사용



전기기구는 KC 인증 제품 등 규격 제품을 사용¹⁾

2) 대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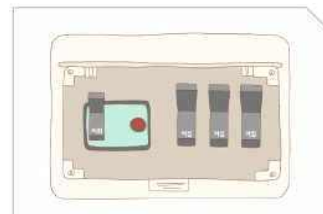
(1) 단순 정전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 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내 정전의 원인을 파악한다.
-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하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나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정전 복구 후 정전 원인이 파악되면,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 * 한국전력공사 24시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119/누전 신고 1588-7500



전류 안전 차단기



가정용 전류 차단기

1) (출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에 시설종사자나 시설이용자가 갇혀있는지 확인한다.
-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재난 위기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한 시설 침수가 예상되면 누전차단기의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 지진, 건축물 붕괴 등의 시설물 재난 위기 시 전원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 전기스토브,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는다.
- 랜턴을 준비하고 휴대폰을 통해 뉴스나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
-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피 시, 시설물의 전기를 차단한다.

3) 기타 활동

- 현관 및 벽면에 있는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 전류 차단기 상태를 확인한다.
-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해 다시 내려갈 경우는 옥내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를 모두 내리고, 메인 차단기인 누전차단기를 올려 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특정 분기개폐기를 올릴 때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다면, 특정 분기개폐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분기개폐기 회로만을 내려놓고 다른 개폐기는 모두 올려 점검한다.
-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는 옥내 전등 및 콘센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전문가 점검을 받는다.

2. 가스 안전관리

1)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가스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가스 안전시설 등을 정기·수시적으로 점검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가스연소기의 상태와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 정기적으로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 등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가스 사용 시에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창문의 개방 및 연소기 작동 시에 환기팬이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정기적인 가스 점검 실시
(검지기, 발포성 용액 이용)



보일러실 배기통 점검



가스 사용 시 충분한 환기 필요

2)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가스누출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한국가스공사 비상계획실 031-710-0453
 - *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750-1240
- 응급조치 후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함이 확인된 후 가스 사용을 재개한다.
- 가스누출 복구 후, 가스누출의 원인이 파악되면,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1) 다음과 같이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환기한다.

- 가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콧과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닫아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다.
-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한다.

(2) 가스누출 부근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스가 누출되어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 시 스파크에 의한 점화로 폭발 가능성이 크다.
- 가스누출 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밸브를 닫아 가스 공급 차단



LPG는 빗자루로 쓸어내듯 환기



전기기구 사용 절대 금지

3) 기타 활동

(1) 가스누출실은 환기 후 사용

- 가스가 누출된 실내나 가스 저장소 등은 모든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었는지 확인 후 업무를 시작해야 안전하다.
- 누출 가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바닥 부분의 환기를 철저히 한다.
- 무색·무취의 가스인 경우 일반적으로 환기 후 남아있는 가스 확인이 어려우므로 주의 깊게 점검한 후 사용한다.

(2) 장마철 침수지역 안전관리

- 도시가스 및 LPG 시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 LPG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가스레인지·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복구할 때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린 후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한다.
-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조절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절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기능을 못 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절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 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수 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보일러 자체가 그을려 수명을 단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조사의 A/S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

1) 낙상

- 낙상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의 신체 일부가 바닥 면에 접지한 경우를 말한다.
- 낙상의 유형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유형	원인
침실 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인지 • 침대에서 내려올 때 주의사항 교육 부족
이동 중 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중 부딪치거나 미끄러짐 • 계단 손잡이가 없거나, 계단 경사가 심함
휠체어 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으로 휠체어 운행 중 사고 발생 • 휠체어 이동 방법 교육 미흡 • 휠체어 노후화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이용자의 낙상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 낙상 유형별 시설물 안전조치를 취한다.

(침실 낙상)

- 저장침대를 설치한다.
- 침대 아래 미끄럼방지 및 충격완화 완충재 혹은 매트를 설치한다.
- 침상 주변에 그림 형태의 낙상주의 표시판을 부착한다.

(이동 중 낙상)

- 복도 및 계단 손잡이를 설치한다.
- 바닥 재질이 미끄럽지 않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휠체어 낙상)

- 휠체어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휠체어 안전벨트를 부착한다.

- 다음과 같은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낙상에 대한 안전 점검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 점검 내용	
현관	외부에서 출입구(현관)까지 이동이 안전한가요? (계단 손잡이가 있나요?)
거실	바닥 재질이 안전한가요? 미끄럽지는 않은가요?
	가구는 안전하게 배치되어 있나요?
	일상생활 이용 물품(전기선출 등)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거실에서 화장실 이동 경로는 안전한가요?
	조명의 밝기는 조절이 가능한가요?
화장실	화장실 전체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가요?
	변기 주변에 안전 지지물(안전 손잡이)이 설치되어 있나요?
	수건 및 휴지 걸이 위치가 손에 닿는 거리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나요?
기타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이용자에게 낙상의 위험을 설명한다.
- 시설이용자에게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토록 수시로 설명한다.
- 시설이용자에게 침대에서 내려올 때의 주의사항을 수시로 교육한다.
- 시설이용자가 이동 중 충돌이 없도록 시설 복도 내 이동 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시행한다.
- 시설이용자가 신발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신발을 착용토록 유도한다.
- 시설이용자에게 휠체어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한다.

III. 유형별 재난관리 활동

1. 사회재난

1) 화재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구분	예방 및 대비 활동
일반화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연 장소를 통제한다. 인화성 물질(라이터, 성냥 등) 소지 제한 및 화기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의 출입을 통제한다. 시설이 숲이나 산 인근에 소재한 경우, 시설 주변 산림의 수목 제거한다. 유류 사용 시 누설 방지대책 및 안전시설(소화기)을 갖춘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 조리기구의 착화원 및 후드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화기 시설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한다.
전기화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안전 점검을 정기·수시적으로 실시한다.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 사용 및 노후 배선을 교체한다.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연물 방치를 금지한다. 전열기 등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퓨즈나 과전류차단기, 전선 등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한다. 천장 속 및 전기기기는 청소를 통해 먼지나 가루를 제거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한다.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화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수시적으로 실시한다. 가스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물질 방치를 금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스와 밸브 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가스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을 금지한다. 가스 사용 전 가스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한 후 사용한다. 가스 사용 후 중간 또는 안전밸브를 닫는다. 가스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잠근다. 가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평상시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와 불가능한 고령자를 사전 파악하여 관리한다.
- 화재 시에 근처에서 달려오는 협력자, 시설종사자 등을 확보한다. 또한 숙직 등의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재난 대응시 시설종사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역할배분을 피한다.
-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사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 평상시 시설종사자와 고령자가 짝을 지어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 평상시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 고령자는 출입구 및 비상 완강기와 가까운 호실로 배치한다.
- 시각장애 고령자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이동하는 동선 안전바에 일정 간격 점자 표시를 한다.
- 기타 고령자의 원활한 대피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한다.
 - 베란다 등에 피난 기구(미끄럼대 등)를 설치하는 등, 2방향 대피경로를 마련한다.
 - 출입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한다.
 - 실내와 대피경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대피장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주위에 항상 휠체어를 준비해 대피상황에 대비한다.
 - 대피 시에 사용할 예정인 승강장치(엘리베이터를 제외) 등을 정전 시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교체한다.
 - 화재에 따른 정전 시에도 피난 경로의 조명이 확보되는 설비·기구를 설치한다.
 - 근처 협력자 등에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이것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과 연동시킨다.)
 - 화재 시에 외부에도 그 내용을 연락하는 음향 장치를 설치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
 - ✓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 다만,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
- ✓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
 -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
 -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
- ✓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② <대규모 시설> 대응 활동

구 분		고령자 특성에 따른 행동 절차	
		자력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고령자
최초 화재 발견	경보 전파	(시설종사자) - 건물 내 화재경보 전파(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 - 119 화재 신고 -비상 연락망 가동(자위소방대 사전임무 지정)	(시설종사자) - 건물 내 화재경보 전파(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 - 119 화재 신고 -비상 연락망 가동(자위소방대 사전임무 지정)
		(시설대표 및 자위소방대)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및 유관기관에 화재 상황 통보로 협조 요청	
	초기 소화	(시설종사자) - 다른 시설종사자에게 도움 요청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 활용	(시설종사자) - 다른 시설종사자에게 도움 요청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 활용
	대피 활동	(시설종사자) - 고령자 대피 유도	(시설종사자) - 화재 발생실 내의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고령자를 우선으로 안전 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 -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 도움 등
(안전관리책임자) 침대 등 직접 이동 시 피난통로 막힘 현상 등 주의하여 시설 특성에 맞게 편성			
화재 대응	자 위 소 방 대	지휘 연락반	- 화재 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 지시 및 통제 -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소화반	- 소화/진압 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기 등) -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 확산 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 등)
		<div></div> <div></div> <div></div>	
	대피반	- 시설이용자 스스로 안전 구역 대피토록 유도 - 구조대, 승강기 피난기, 미끄럼대, 완강기 등 활용 가능한 피난 기구 활용	- 대피반 인원 편성 시 시설이용자의 보조 인력 임무 편성 후 시설이용자의 대피 활동 지원 - 구조대, 승강기 피난기, 미끄럼대, 완강기 등 활용 가능한 피난 기구 활용
		- 피난 기구(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등) 설치 후 시설이용자 대피 유도 -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시설이용자 대피 유도 - 피난 기구는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 가능한 피난 기구를 설치 후 운용	
구조반	구조반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 초기에 대피반 임무 지원	- 시설이용자 대피 완료 시까지 구조반 인원은 최소로 운용하고 시설이용자의 대피 활동 지원
		- 구조·구급 장비 준비 및 구호 조치 장소 확보 - 응급환자 구호 조치 및 환자 분류, 의료기관 도착 시 지원 활동	
비 고		- 세부 내용은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 대응하며, 시설별 특성에 맞게 추가하여 활용함 - 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 임무는 소방대장 지휘통제 받음	

③ <소규모 시설> 대응 활동

구 분		고령자 특성에 따른 행동 절차	
		자력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고령자
최초 화재 발견	경보 전파	(시설종사자) - 건물 내 화재경보 전파(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 - 119 화재 신고	(시설종사자) - 건물 내 화재경보 전파(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 - 119 화재 신고
		(시설종사자) • 경보전파 가능한 아동을 선정하여 초기경보 가능토록 교육 및 임무 부여 • 근무자 수가 제한되므로 경보전파는 관할소방서(119)에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경보전파는 소방서 경보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움받도록 함	
	초기 소화	(시설종사자) - 다른 시설종사자에게 도움 요청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 활용	(시설종사자) - 다른 시설종사자에게 도움 요청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 활용
	대피 활동	(시설종사자) - 고령자 대피 유도	(시설종사자) - 화재 발생실 내의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고령자를 우선으로 안전 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 -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 도움 등
(시설종사자) • 피난층 등 대피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고령자의 원활한 대피 유도 • 시설이용자가 자력으로 대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며,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고령자부터 대피 유도			
화재 대응	소화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방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화 활동 실시 (옥내소화전 사용)초기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실의 문을 폐쇄하고, 시설이용자를 우선으로 대피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인계(화재 장소, 미 대피자 현황, 환자 발생 여부 등)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상구 등 시설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이격시키고 소방대의 도움을 기다림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 통제를 받아 대피 및 구조활동 실시 (소방대 도착 후는 구급활동 위주 임무를 수행토록 함) <div></div> <p>구급대 도착 후</p>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부 내용은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 대응하며,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함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음		

④ 대피 행동 요령

[시설종사자의 역할]

- 유사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장애인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평상시 대피 훈련을 통하여 대피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이용자가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문을 연다.
- 만약 갇혔다면 화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소음을 만들어 주위에 알리도록 한다.

가.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유형

(고령자 1인 대피 요령)

- 시설종사자에게 매달릴 수 있는 고령자는 업어서 대피한다.
- 시설종사자에게 매달릴 수 없는 힘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안아서 대피한다.
- 시설종사자 두 명이 손을 끼고 받쳐서 대피한다.

(휠체어 사용 고령자 대피 요령)

- 평상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시설종사자가 휠체어를 밀어서 대피한다.

(중증 고령자 대피 요령)

- 아래 그림과 같이 시트를 이용하여 들거나 끌어서 대피한다.²⁾



* 시설종사자 1인이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할 경우, 중증 고령자의 머리에 충격이 없도록 머리 부분 시트를 끌어서 대피한다.

(치매 고령자 대피 요령)

- 재난 발생 시 불안정한 상태가 되므로 재난 상황을 설명하여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평상시 친숙한 대상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동 때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동을 유도한다.

나. 자력 대피가 가능한 유형

- 사전에 지정한 대피로를 통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동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2) (출처) 행정안전부(2020)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 가이드 라인 및 시나리오(노인 요양병원)'를 발췌·수정함

- 화재 시 연기를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젖은 수건,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피 후 행동 요령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 및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전원조치 시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전원조치가 결정될 경우, 전원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이행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

2) 건축물 붕괴 재난

- 건축물의 하자 혹은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파손·훼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붕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
-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붕괴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시설 주변 건축물 굴착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
 - ✓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 다만,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
 - ✓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
 -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
 -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
 - ✓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아래의 [건축물 붕괴 징조]가 감지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유관기관에 신고한다.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때
 -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때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가 노출된 때
 - 바닥의 기둥 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때
 -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때
 - 기둥 주변에 거미줄 형 균열이나 바닥 슬래브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때
 -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석축·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 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나는 때

② 대응 활동³⁾

가. 건축물 붕괴 발생이 임박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3)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시설종사자에게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대피를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1) 건축물 붕괴 발생 위기 시 시설이용자들을 사전 계획한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시킨다.
- (2) 시설이용자와 대피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대피한다.
 -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동 및 대피 과정에서 압사, 낙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밖으로 나갈 때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한다.

나.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붕괴된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119등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며, 주변을 살펴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
- 주변에 대피하지 못한 다른 시설종사자나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건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장소로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응급처치를 한다.
- 구조대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이 번갈아 가며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리도록 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시설이용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구조될 수 있음을 확신시킨다.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한다.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 휴대전화가 불통 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 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 주기로 on/off 해준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ライター, 난로(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한다.

다. 붕괴된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종사자의 역할]

-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 폐쇄된 공간은 공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여 호흡을 유지한다.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린다.
-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한다.
- 주변을 살펴 음식과 물을 확보하고,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 유지에 힘쓴다.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이나 기둥,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린다.

③ 대피 후 행동요령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 및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전원조치 시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건축물 붕괴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전원조치가 결정될 경우, 전원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이행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건축물 붕괴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

2. 자연재난

1) 태풍·호우재난

- 태풍으로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시설의 파손·훼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자체 풍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
-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태풍 및 호우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태풍 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등)
- 시설 내 건축물과 주변 배수구, 하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점검을 실시한다.
- 침수 위험 지구를 파악하고, 침수 위기 시를 대비하여 모래주머니를 적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시설 내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평상시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와 불가능한 고령자를 사전 파악하여 관리한다.
-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길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
 - ✓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 다만,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
 - ✓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
 -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
 -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
 - ✓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지속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저층 건물 내의 중요 물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 전기는 축전지나 자가 발전시설 등을 확인한다.
- 단수를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고, 가스는 비상용 가스용기를 준비하여 둔다.



배수구, 하수관거 등 배수시설 점검



식량, 식수, 생필품 등 비상키트 사전 준비

② 대피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위기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고령자를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유사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시설이용자를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평상시 대피 훈련을 통하여 대피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고령자 대피 요령

(고령자 1인 대피 요령)

- 시설종사자에게 매달릴 수 있는 고령자는 업어서 대피한다.
- 시설종사자에게 매달릴 수 없는 힘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안아서 대피한다.
- 시설종사자 두 명이 손을 끼고 받쳐서 대피한다.

(휠체어 사용 고령자 대피 요령)

- 평상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시설종사자가 휠체어를 밀어서 대피한다.

(중증 고령자 대피 요령)

- 아래 그림과 같이 시트를 이용하여 들거나 끌어서 대피한다.⁴⁾



4) (출처) 행정안전부(2020)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 가이드 라인 및 시나리오(노인 요양병원)'를 발췌·수정함

- * 시설종사자 1인이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할 경우, 중증 고령자의 머리에 충격이 없도록 머리 부분 시트를 끌어서 대피한다.

(치매 고령자 대피 요령)

- 평상시 친숙한 대상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동을 유도한다.

나. 자력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의 대피 요령

- 사전에 지정한 대피로를 통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엘리베이터는 이동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③ 대피 후 행동 요령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 및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전원조치 시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전원조치가 결정될 경우, 전원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이행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

2) 지진 재난

-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파괴되고 시설이 붕괴되어 대량의 사상자나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
- 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진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예: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등)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평상시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와 불가능한 고령자를 사전 파악하여 관리한다.
-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길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 전원조치 계획서를 수립한다.
 - ✓ 평상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일 자치구 내 전원조치 가능한 생활시설을 파악한 후, 비상시 전원조치가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 동일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인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원시설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사전 공지한다.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비상시 전원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다.
 - ✓ 최우선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목록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 시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의 정보(성명, 보호자연락처 및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시설이용자용 명찰 등을 준비한다.
 - ✓ 전원조치가 진행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송전략을 수립한다.
 - 시설 소유 차량 이용 시
 - 119 응급차 이용 시
 - 사설 응급차 이용 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 시설종사자의 개인소유 차량 이용 시

- 기타 시설이용자 전원 방법 등
- ✓ 시설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
 - ✓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
- ※ 다만,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
- ✓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
 -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
 -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
- ✓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 전기는 축전지나 자가 발전시설 등을 확인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고, 가스는 비상용 가스용기를 준비하여 둔다.



식량, 식수, 생필품 등 비상키트 사전 준비

② 대응 활동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지진이 멈춘 후 시설 및 시설종사자, 시설이용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 유관기관에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추가 지진에 대비한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지진이 발생하면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는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지진 멈춘 후,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테이블이 없을 경우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크게 흔들리는 1~2분간 테이블 밑으로 대피, 방석으로 머리 보호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화재 시 불을 끄고, 가스와 전기 차단, 출구 확보도 중요

- 불을 초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에 화재 규모가 작을 때이다.



첫 번째 기회

크게 흔들리기 전, 즉 흔들림이 작을 때이다.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 『지진이 다. 불을 꺼라!』 라고 소리를 치고 사용 중인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끈다.



두 번째 기회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이다. 크게 흔들릴 때는 요리 중인 그릇 등 이 떨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므로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또 『불을 꺼라!』 라고 소리를 쳐서 불을 끈다.



세 번째 기회

발화된 직후이다. 만일 불이 나도 1~2분 이내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둔다.

③ 대피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위기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유사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고령자를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자위소방대의 협조를 요청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유사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장애인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평상시 대피 훈련을 통하여 대피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이용자가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문을 연다.
- 만약 갇혔다면 화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소음을 만들어 주위에 알리도록 한다.

가.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고령자 대피 요령

(고령자 1인 대피 요령)

- 시설종사자에게 매달릴 수 있는 고령자는 업어서 대피한다.
- 시설종사자에게 매달릴 수 없는 힘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안아서 대피한다.
- 시설종사자 두 명이 손을 끼고 받쳐서 대피한다.

(휠체어 사용 고령자 대피 요령)

- 평상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시설종사자가 휠체어를 밀어서 대피한다.

(중증 고령자 대피 요령)

- 아래 그림과 같이 시트를 이용하여 들거나 끌어서 대피한다.⁵⁾



* 시설종사자 1인이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할 경우, 중증 고령자의 머리에 충격이 없도록 머리 부분 시트를 끌어서 대피한다.

5) (출처) 행정안전부(2020)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 가이드 라인 및 시나리오(노인 요양병원)'를 발췌·수정함

(치매 고령자 대피 요령)

- 평상시 친숙한 대상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동을 유도한다.

나. 자력 대피가 가능한 고령자의 대피 요령

- 사전에 지정한 대피로를 통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엘리베이터는 이동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젖은 수건,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대피 후 행동 요령

-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시설 전원조치 및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

생활시설 전원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전원조치 시 행동 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전원조치가 결정될 경우, 전원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이행한다.

이용시설 귀가조치

가.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하게 대피한 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
-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

부 록

1.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3. 안전관리점검표
4. 안전관리점검 시기 및 방법
5. 관련 규정

1.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보고기관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절차 협의 등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지역 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치료·장례, 이재민 구호, 긴급 복구 등 • 구호 물품 지급 및 인명피해 지원 • 이재민 임시 주거 건축, 및 가동 • 사망자 유족 대책 수립·추진 및 부상자 치료 지원 ○ 사고 잔해물 처리 및 인력·장비 동원 명령, 인근 시·군·구 응원 요청 ○ 관련 기관 합동 화재 원인조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복구를 위한 합동조사반 ○ 폐기물 처리 지원 대책 추진 ○ 파손·방치 차량 견인 및 사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교통 두절 지역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점검 및 복구 ○ 대형화재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건축폐기물 처리 등 장비·예산 활용방안 수립·추진 ○ 사고수습 및 복구 장기화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자 관련 행정적인 조치사항 지원 ○ 타 시설로의 이송과 관련된 자료 지원 ○ 기타 시설이용자 관련 자료 지원
소방서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 화재피해조사 및 원인조사 ○ 응급 복구 계획 및 원인조사 ○ 응급 복구 계획 수립·지원 ○ 부상환자 긴급 후송 ○ 복구 지원체계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시설 관련 바우처 업체 등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성

-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복지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은 당황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
- 재난 대응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교재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상세한 사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② 작성 시 고려사항

- 안전계획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위협이 되는 재난 유형을 분석·평가하여, 복지시설의 특성에 부합하여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예: 화재 위기대응 매뉴얼, 가스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
- 안전계획에는 재난 발생 인지 방법, 전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다.
- 안전계획서는 시설이용자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과 훈련, 재난별 대응 방법, 피난 절차 등을 수록한다.
- 현장에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포함할 항목

①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 복지시설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재난 유형에 대하여 예방·대비 활동에 관하여 기술한다.
- 재난 위기 상황 시 대응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다.
(화재 위기대응 매뉴얼) 상황전파, 초기 진압, 대피, 사후 조치, 응급처치, 기타 등
(가스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상황인지, 우선 조치, 상황전파, 사후 조치, 응급처치, 기타 등
- 활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소방계획서

-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알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불이야 외치거나 발신기 경보를 누른다)
- 관련 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화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진화하도록 소화 시설 위치와 사용 방법을 포함한다.
- 화재경보나 초기소화에 실패한 후 행동하여야 할 요령을 표시한다.

③ 피난계획서

- 피난과 관련된 안내도나 안내방송 등을 포함하여 교육 훈련용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피난 목적과 피난 유도 조직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 피난 유도자 임무와 피난 방송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다.
- 시설이용자 특성별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실내에 피난하지 못한 시설이용자 색출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
- 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문을 예시문으로 제시한다.

④ 피난안내문

- 시설에 있는 이용자의 특성을 분류하여 해당자가 쉽게 방송을 듣거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선택하여 안내문이나 대피방송을 위한 문구 등이 필요하다.

⑤ 피난안내도

-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피난 방향을 표시한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장치,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 안내도 위치에서 피난 계단까지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안내도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한다.

3. 안전관리점검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표

시 · 군 · 구	시설 유형	시설명(운영법인)	시설담당자	연락처
운영 주체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민간(법인) ☐ 민간(개인)		시설장	
시설소재지			연락처	
점검 일자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1)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1) 시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는가? (시설, 주변 환경, 이용자 특성 등)?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 안전관리책임관(시설장) 및 정·부 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3)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생활시설 연 2회, 이용시설 연 1회 이상)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4)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및 개별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는가?	결 과	☐ 가입 ☐ 미가입 ▪ 가입사 ☐ 사회복지공제회 ☐ 민간보험사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 과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3)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 과	☐ 2억 미만 ☐ 2억 이상 ☐ 3억 이상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소 화 기	(1)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 위치가 녹색이며 내부 분말은 굳어있지 않은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소화 설비	(3) 소방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단독경보형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3) 소방안전관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가?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4) 옥내소화전함 내에 호스와 관창의 상태가 양호하며, 개폐 밸브가 잘 열려 물이 방수되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5) 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이 없으며, 설비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6) 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7)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8) 소방차 진입로와 소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9)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으며, 전원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0)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소방서로 정상 연결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피난 설비 등 적정 관리	(11) 복도나 실내에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 지도와 피난 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2) 피난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으며, 식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3) 비상조명등이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4) 시설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피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5) 설치된 피난 기구는 견고하며 설치 위치 표시 및 사용 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6) 피난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으로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7) 방화문(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8) 제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9) 배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3) 소방 안전 관리	내화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0)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1)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로 사용하였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출입 통제 구역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2) 내부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였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3)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결 과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시) 건축물 연면적 ☐ 1,000㎡ 미만 ☐ 1,000㎡ 이상
	(4) 전기 안전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해당없음
		(24)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 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 배·분전반의 분진, 부식, 누수 여부 및 설치위치가(노출된 장소 설치 등) 적절한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5) 가스 안전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 및 차단기의 과열·손상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3) 옥내·외배선의 전선용량, 공사방법 적정 여부 및 열화·손상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5) 가스 안전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4) 규격에 맞는 전선과 콘센트를 사용하며, 노출된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5) 전기 정기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5) 가스 안전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1)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2) 가스시설에 손상이 없으며, 비눗물 등을 활용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5) 가스 안전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3) 가스 보일러(온수기)와 배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급기구와 환기구는 막힌 곳이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4) LPG 저장시설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 보관상태가 적절한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5) 가스 안전 관리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5) 도시가스·LPG 등 각종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6) '연소기'는 검사품 또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였는가 ?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6) 재난 대응 대책	(1) 재난 발생 시 정보수집과 경보전파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2) 재난 대응 협력 기관(소방서, 지자체 등)과 비상 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3) 화재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피체계를 수립, 훈련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4)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피체계를 수립, 훈련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5) 지진에 대비한 대응조치, 대피체계 및 훈련을 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6) 낙상 예방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7) 재난으로 고립되었을 때 시설 생활자에 대한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8) 생활자시설의 경우, 대피 후 “시설 전원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9) 이용자시설의 경우, 대피 후 “안전 귀가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7) 시설물 안전 관리	(1) 건축물 지반침하, 구조체(벽, 지붕, 옥상 등)에 변형 및 누수의 흔적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2) 철근의 노출·부식,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 창호 개폐 불량 등 건축물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3) 지붕·옥상배수관·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은 없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4) 시설 주변의 담장이나 옹벽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5) 시설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가?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6) 내진 설계 적용이 안 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결 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사 유	
		조치사항	☐ 조치 완료 ☐ 추후 조치

4. 안전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

구 분		일 정	방 법
하·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		하절기(5월) 동절기(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 및 시설 관리인 실시 - 안전 점검 실시 후 구청 희망이음 보고
시설 자율 점검	건축	매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관리인 실시 - 관련 법령 및 자체 기준에 의한 점검 - 자율점검 실시 후 내부 보관
	소방		
	전기		
	가스		
비상구 점검		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 관리인 실시 - 자율점검 실시 후 내부 보관 - 월별 비상구 관련 교육 포함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5월(작동) 11월(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업체 대행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전기안전관리		매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업체 대행 - 저압 및 300KW이하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3년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행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
도시가스 정기검사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업체 대행 -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실내공기질 검사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업체 대행 - 검사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승강기정기검사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업체 대행 -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내부 보관

5. 관련 규정

1)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법 항목

① 보험 가입 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한다.
-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② 시설 안전 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설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③ 소방시설 설치 의무(소방시설법 제9조)

-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